운 영 규 정

2023 年

안심생활 복지용구 사업소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 목적 / 명칭

-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 19조 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며 "안심생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

◆ 중점 / 방침

- 수급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 판매제품은 수급자 별 기준에 따라 15% ~ 0%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 대여제품은 수급자 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 세부지침

- 우리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인종·성별·연령·국적·결혼상태·성격·경제적 지위·정치적 성향·정신적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어르신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수급자 다수가 고령자임을 고려, 수급자 당사자의 인지능력에 따라, 수급자의 보호자를 탐색 및 연락하여 제품 제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한다.

2. 계약기간
   - 대여 제품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 판매 제품 :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에게 전달, 나머지 1부는 기관에 보관 한다. 수급자가 계약서에 서명 할 수 없을 경우, 신원인수인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 부담 (%)	본인 부담 (%)	내 역
1,600,000 원	일반 수급자	85	15	85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15 % 본인 (수급자) 부담
	경감 수급자	91	9	91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9 % 본인 (수급자) 부담
	경감 수급자	94	6	94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6 % 본인 (수급자) 부담
	기초 수급자	100	0	100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복지용구 하자 발생 시, AS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제품 대여 기간 중 거주지 이전 및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대여불가 상황 발생 시, 즉시 기관에 통보 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 할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등에 오염 파손 분실 시 원상복구 의무

7. 기관의 의무
- 수급자가 요양원 시설 입소 및 의료기관 입원 시,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대여 제품 이용 중, 수급자의 상태 변경 (병원 입원, 요양원 시설 입소)시, 대여제품을 회수 및 부분 청구 등을 진행하며, 계약 전 수급자에게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가 제한 됨을 수급자에게 설명한다.

8.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서 탈락 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 또는 사망 하였을 경우
- 대여제품 이용 중 5회 이상 이용료 연체 하였을 경우

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수급자가 하기의 내용으로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장기 요양 보험 자격이 탈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하향 또는 상향에 의해 본인 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 요양 대상자구분 변경)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제품 대여가능 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급여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여제품 대여 중 장기 요양 보험 자격이 탈락되었을 경우, 제품 회수 진행 및 필요시 비보험으로 제품을 대여를 지속한다.
   - 장기 요양 대상자 구분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일자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대여제품 대여 중, 수급자의 병원 장기 입원 시, 제품 회수 제품 회수 진행 및 필요시 비보험으로 제품을 대여를 지속한다.
   - 이용료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 품목을 선택, 본인부담금을 부담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 본인부담금을 부담

2.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10개 항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대여품목 6개 항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욕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2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3. 급여비용 본인 부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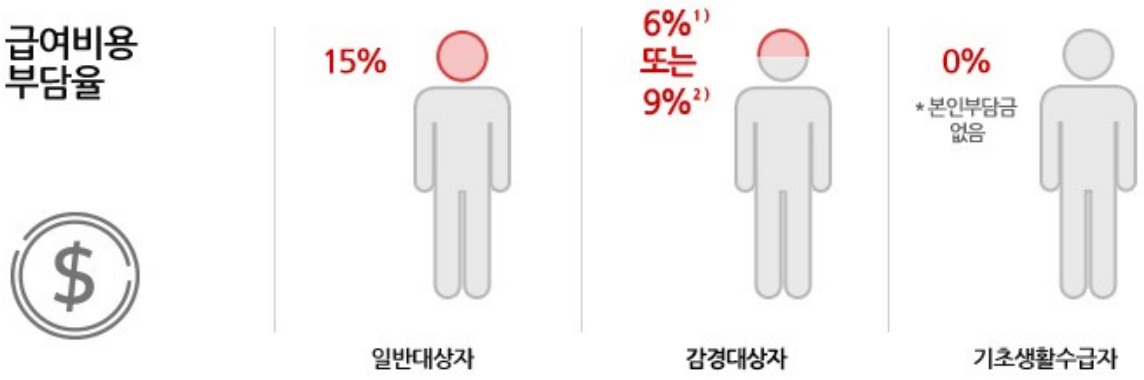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5. 급여기준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4)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취급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1. 취급제품의 홍보
   -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방문, 복지용구 기관 방문한 수급자에게 제품을 홍보 한다.

2. 정보게시
   -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 및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 표기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 제픔의 배송방법에는 기관 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 배송, 택배 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 끌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복지용구 반입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방법 및 제품 설명은 수급자 및 보호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진행한다.
   -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 관리
   -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개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소독방법 : 위탁소독)

1. 복지용구 대여제품 소독 방법에는 기관 자체소독과 소독전문업체 위탁 소독으로 나뉜다.
   - 본 기관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진행함

2. 소독 완료된 복지용구 대여제품 보관방법
   - 소독 완료된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 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 소독이 완료된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완료' 라벨을 붙여 다른 제품과 명확하게 구분, 보관한다.